

2022학년도

중등 사사과정 과학영재 선발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중학교 2학년 재학생 중
영재교육기관 수료예정자 대상]

모 집 요 강



(공고일: 2021. 09. 13.)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Incheon Science Elite Program

전화 : 032) 835-4971 FAX : 032) 835-4976

2022학년도 중등 사사과정 과학영재 선발

(현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 중 영재교육기관 수료예상자 대상)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과학영재를 발굴하여 교육하고자 2022학년도 중등 “사사과정” 교육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인원

분야	수학·과학
프로젝트 팀수	9개
모집인원	45명 내외(팀별 3명 이상)

2. 지원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각 프로젝트의 주제와 개요를 확인하고 원서 접수 때 전공과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당 지원자가 정원의 2배수를 넘지 않으면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고 면접 평가 때 서류 평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하더라도 2021학년도에 ‘본 원의 기초사사과정 또는 교육청 지정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과정’을 수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의 평가 성적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평가 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접수는 해당 일, 해당시간 외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허위임이 드러나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선발기간 중 합격자 발표 등 공지사항은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본 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iseclub.com>)에 공고하므로 수험생들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이익은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교육원 선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3. 학생 추천 가능 기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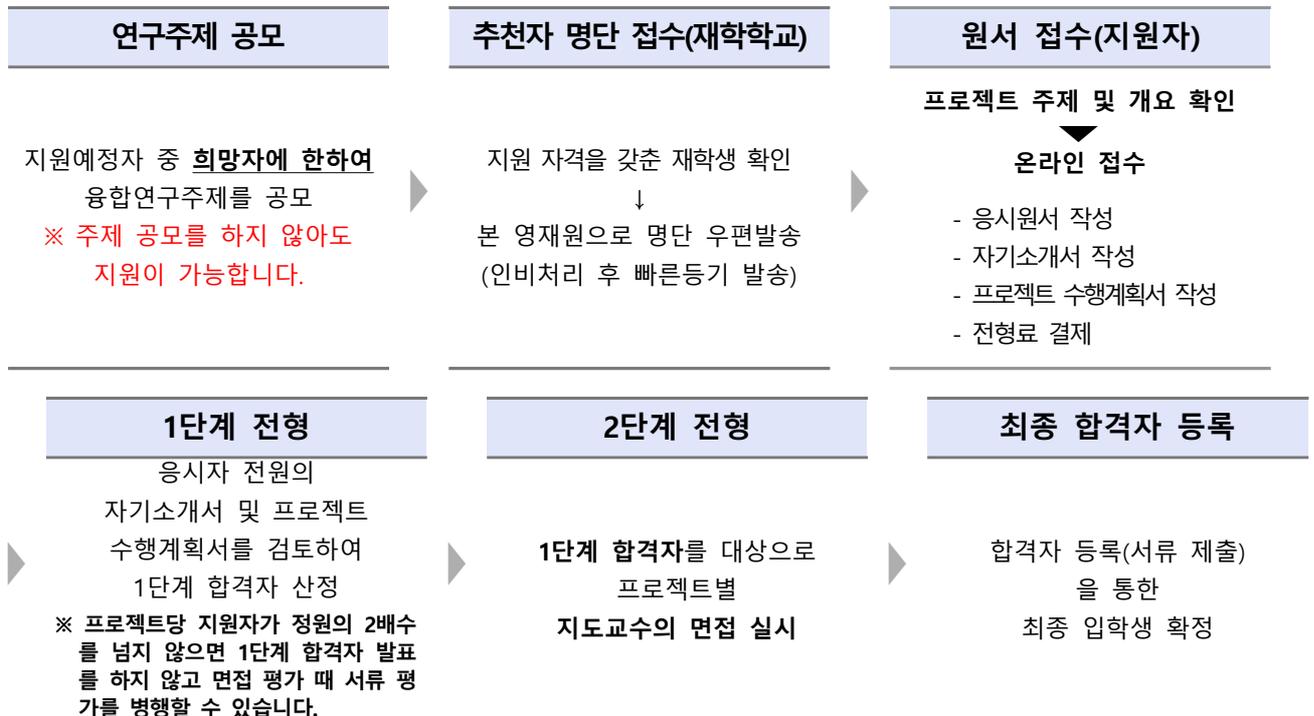
- 본 선발에 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은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각 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인천과학고 과학영재교육원, 진산과학고 창의융합영재교육원, 과학예술영재학교 융합영재교육원,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재원생이 재학하고 있는 재학학교가 해당됩니다.(예: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다니는 학생 나천재가 ○○중에 재학 시, ○○중학교장 명의로 나천재를 본 원에 추천해야 원서접수 가능).

4. 지원 자격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지원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종류		지원 자격
교육청 지정 영재교육기관 재원생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2021학년도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서 각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의 <u>중학교 2학년 영재교육과정 수료예정자</u> 중 재학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과학고 영재교육원	2021학년도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융합영재교육원), 인천과학고(과학영재교육원), 진산과학고(창의융합영재교육원)의 영재교육원의 <u>중학교 2학년 영재교육과정 수료예정자</u> 중 재학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위학교 영재학급	2021학년도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서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u>1학년 과정을 기 수료하였으며, 올해 2학년 과정을 수료할 예정인 자</u> 중 <u>재학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u> ※ 1학년 또는 2학년 과정만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재원생	중등 기초사사 과정	2021학년도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서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중등 <u>기초사사과정 수료예정자</u> 중 <u>재학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u> ※ 본 원의 재학생도 소속 학교에서 추천자 명단을 접수하여야 원서 접수 가능

5. 선발 진행 과정



※ 응시자의 다양한 특성을 1~2단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발

6. 선발 일정

내용	일정	시간	장소	비고
연구주제 공모	2021. 09. 13(월) ~ 09. 30(목)	09. 13(월) 18:00 ~09. 30(목) 18:00	isep00@inu.ac.kr	※ 공모 안내 및 연구주제 설명서 양식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추석 연휴	2021. 09. 20(월)~09. 22(수)			
서류 양식 공개 및 프로젝트 주제 공개	2021. 10. 21(목)	17:00~	http://www.isepclub.com	
추천자 명단 접수	2021. 10. 25(월) ~ 11. 01(월)	-	-	※ 학교장 추천 공문 및 추천자명단 등기 접수 ※ 방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2021. 11. 02(화) ~11. 08(월)	11. 02(화) 11:00~ 11. 08(월) 18:00	http://www.isepclub.com > 중등사사선발	※ 학생사진 이미지 등록 (129×167 픽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명한 것 등록
1단계 합격자 발표	2021. 11. 19(금)	17:00~	http://www.isepclub.com > 중등사사선발	※ 프로젝트당 지원자가 정원의 2배수를 넘지 않으면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고 면접 평가 때 서류 평가를 병행할 수 있음.
면접	2021. 12. 4(토)		추후 공지	※ 교사장 공고일 12. 1(수) 17:00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2. 10(금)	11:00~	http://www.isepclub.com > 중등사사선발	※ 홈페이지 확인 ※ 전화 문의 불가
합격자 등록	2021 12. 13(월) ~12. 14(화)	-	합격자 제출서류 우편 접수	※ 등기 우편으로 발송 ※ 12. 14 소인까지 인정

※ 상기 일정은 대학 일정과 중복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일정은 홈페이지에 공지

7. 원서 접수

※ 소속 학교(재학중인 학교)에서 추천 공문과 추천자 명단 모두가 접수되어야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 추천자 명단 접수(학교)

- 양식 다운로드 경로 : <http://www.isepclub.com>>중등사사선발>우측상단 양식다운받기 바로가기
- 접수방법: 우편 접수(인비처리)

※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경우 1,2학년 모두를 수료예정인 자의 명단만 취합 후 우편 접수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학교장 추천 공문 1부	인비처리 후 우편접수	※ 학교장 명의의 추천자 명단 제출 ※ 공문 본문에는 추천인원을 명시하고, 본 영재원이 제공하는 추천자 명단 서식을 붙임파일로 활용하여 결재 진행 ※ 공문과 붙임서류를 함께 우편(빠른 등기)로 발송
추천자 명단 1부		

- 접수기간: 2021년 10월 25일(월) ~11월 1일(월)
 - ※ 11월 1일(월)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 접수된 학교는 본 영재원 홈페이지(<http://www.isepclub.com> > 홈페이지바로가기 > 공지사항) 또는 '<http://www.isepclub.com> > 중등사사선발 > 선발 안내 > 공지사항' 에서 확인 가능
- 주소: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별관 B동 6층 601호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영재선발담당자 (봉투에 '2022학년도 영재 선발 추천자 서류 재증' 기재)

※ 원서 접수는 방문 접수 없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합니다.

나. 온라인 접수(학생)

- 접수 사이트: <http://www.isepclub.com> > 중등사사선발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2021년 11월 2일(화) 11:00 ~ 11월 8일(월) 18:00
 - ※ 응시자는 프로젝트의 주제와 개요를 확인 후 **프로젝트를 선택**
 - ※ 1지망, 2지망은 **다른 프로젝트로 선택**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는 접수 완료 후에도 수정 가능(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 ※ 수험표는 전형료 결제 후 출력 가능
- 등록 내용: 제출 서류 목록 및 영재원 제공 양식 참조

제출 서류 목록	대상		접수 방법		유의 사항
	공통	해당자	홈페이지 입력	우편	
응시원서	○		○		※ 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판(3×4)사진 파일 첨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		※ '양식다운받기'에서 서식을 출력하여 학생, 보호자 모두 서명 후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이미지 파일 첨부
자기소개서	○		○		※ 각 문항별 제공된 분량에 따라 작성하여 등록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		○		
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 【별표 1】 참조		○		○	※ 해당 자격에 대한 서류 모두 제출 ※ 서류 미비할 경우 응시 제외 ※ 제출 서류 검토 후 응시 최종 확정

- 영재원 제공 양식 다운로드 경로: <http://www.isepclub.com> > 중등사사선발 > 양식다운받기
- 이미지 파일 준비 필요: 학생 사진,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명본
- 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는 우편 제출: **11월 8일(월)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증빙서류 접수가 되어야 최종 접수 완료, 증빙서류 미발송시 온라인접수 무효)
- ※ 교육원 주소: (21999)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별관 B동 6층 601호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영재선발담당자 (봉투에 '2022학년도 사사 선발 서류 재중' 기재)

나. 전형료

전형료	납부대상	납부기간 및 방법
1단계 30,000원	응시자	11월 2일(화) 11:00 ~ 11월 8일(월) 18:00 ※ 프로젝트수행계획서 작성 후 전형료 납부 진행 ※ 삼성카드, 삼성페이, 인천이음 등 상품권 결제 불가

- ※ 사회통합대상자는 전형료 면제
- ※ 2단계 면접비용은 교육원에서 부담

다. 수험표 출력

- 서류접수 완료 후 선발메뉴 중 '접수확인'에서 수험표 출력 가능(컬러 출력)
 - ※ 수험표 컬러 출력이 어려운 경우 응시원서 작성 시 등록한 동일한 사진을 붙임
 - ※ 면접 전일까지 수험표 출력 가능
- 면접 당일 수험표 지참

8. 최종 선발방법

- 입학정원의 100%를 평가 점수 순으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지도 교수의 평가 점수를 우선하여 선발
-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하며 그 결원은 차점자 순으로 충원
- ※ 응시자의 평가 성적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음
- ※ **평가 내용 및 성적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9.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합격자 발표: 2021년 12월 10일(금) 11시 이후
- **합격자 등록 기간: 2021년 12월 13일(월) ~ 12월 14일(화)**
- 합격자 등록방법: 우편으로 서류 제출
 - **12월 14일(화)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 교육원 주소: (21999)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별관 B동 6층 601호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영재선발담당자 (봉투에 '2022학년도 사사 선발 서류 재중' 기재)
- 제출 서류: ① **개인정보동의서 1부(합격자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반명함판 사진(3×4) 2매**
③ **소속 영재교육기관의 수료예정증명서(또는 수료증 사본) 1부**
 - ※ 단위학교 영재학급에 재학 중인 자는 '1학년 과정의 수료증' 과 '2학년 과정의 수료 예정증명서' 모두를 제출해야 함

10. 사사교육 운영 방침

- 1년 교육과정으로 진행
- 교수 및 영재교육전문가의 직접 교육
- 11월 초 사사발표회를 통해 프로젝트별 연구성과를 공유
- **사사과정 운영 원칙**
 - 각 프로젝트별 교육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 최종합격예정자가 2인 이하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폐강할 수 있다.
- 교육 시간은 각 팀별로 결정(**학기 중 주말, 평일 오후(저녁) 또는 방학 집중교육**)
- **1인당 연간 20만원의 교육비 발생 할 수 있음. (사회통합대상자 교육비 전액 면제)**
 - ※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
 - ※ 정규 교육 및 운영비에 사용되지 않으며, 학생지원비등에 활용 예정

【붙임 1】 사회통합대상자 범위 및 제출 서류(2022학년도)

1. 사회통합대상자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기회균등 대상자	<p>법령에서 정한 대상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 <u>‘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u>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u>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u> ②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u>「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상위계층)</u>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2) <u>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차차상위계층)</u>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자
사회 다양성 대상자	<p>■ (공통조건)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5)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 조손가족의 자녀, 입양 자녀(입양된 자녀만 해당) 6) 순직공무원(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등)의 자녀 7) 장애인의 자녀{(구)1~3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한 가지 조건의 증빙 서류만 제출할 것.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1) 기회균등대상자 제출 서류

지원 자격	제출 서류(각 1부)	공동 제출 서류 (각 1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 대상자확인서 (본 교육원 소정 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 행정복지센터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발급		
법정 차상위 계층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계층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교육비지원확인서 (2021. 3. 1.자 이후 발급분) : 주민센터 또는 행정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2) 사회다양성대상자 제출서류

지원 자격	제출 서류(각 1부)	공동 제출 서류 (각 1부)
다문화가정의 자녀	•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소득 160%의 가구 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참고1, 2의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에 따라 적용) • 사회통합 대상자확인서 (본교 소정 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부양자 전원, 최근 2년 이 내 발급 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 는 영수증 (부양자 전원) :최근9개월 (2021.01~ 2021.09)간 고지 금액이 표시된 것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 장관 발급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교육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	• 복지시설재원증명서	
소년·소녀 가정의 학생,조손가족의 자녀	• 사실관계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복지사 확인	
입양된 자녀	• 입양관계증명서	
순직공무원의 자녀	• 순직확인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등록증 사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필요 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참고 1】 중위소득 160% 관련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941,000	170,536	174,281	171,997
3인	6,374,000	220,987	238,835	224,800
4인	7,802,000	270,748	300,338	278,094
5인	9,212,000	321,769	356,168	337,302
6인	10,606,000	380,152	420,252	414,255
7인	11,99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3,385,000	486,115	531,814	540,144
9인	14,775,000	540,144	583,151	634,303
10인	16,165,000	634,303	661,710	816,530

※ (출처)국가통계포털,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분위금액값(21.2.20.)

【참고 2】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

【가구원 수 산정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조부·조모 또는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건강보험료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
-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지원자가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 이혼 가정의 경우 학생을 부양(친권자)하는 부 또는 모의 납부실적만 반영함

【산정·적용 사례】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적용)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적용 사례
 - ①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 2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2천원) ⇒ 혼합기준 적용
 - ② 조모,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가정주부), 지원자, 남동생(중학생)인 경우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수 1인 ⇒ 아버지 건강보험료만 반영 ⇒ 지역기준 적용
 - ③ 조부, 아버지(자영업), 어머니(교사), 지원자, 누나(대학생), 여동생(중학생)
: 가구원 수 5인, 수입 가구원수 2인 ⇒ 아버지, 어머니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 혼합기준 적용
 - ④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미혼 직장인)
: 가구원 수 4인, 수입 가구원 수 2인 ⇒ 어머니와 형 건강보험료 합산 반영 ⇒ 혼합기준 적용
 - ⑤ 아버지(자영업, 이혼), 어머니(자영업, 친권자), 지원자, 여동생(중학생), 형(기혼 직장인)
: 가구원 수 3인, 수입 가구원 수 1인 ⇒ 어머니 건강보험료만 반영. 단, 형은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지역기준 적용